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6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6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안 제49조제1항 등)	3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6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7. 06.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

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안 제49조제1항 등)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의무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u>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u><후단 신설></u>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 <u>전면 및 후면의</u> ----- <u>각각</u> ----- ----- ----- ----- ----- <u>. 이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대상·위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전면부 구조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49조의2(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장치의 설치)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이륜자동차의 판</u>

현행	개정안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u>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u> <u>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 제84조(과태료)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u>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면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전면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장치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면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면에만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¹⁾은 이륜자동차를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

1)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²⁾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0호³⁾는 제49조제1항을 위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① <삭제 2025.3.1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⑦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륜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다른 차종에 비해 심각한 인명피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⁴⁾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교통사고 19만 3,889건 중 사망자는 2,549명으로 치사율⁵⁾이 약 1.31%인 데 비해, 이륜자동차 사고는 1만 2,092건 중 사망자가 298명으로 치사율이 약 2.46%에 달해 전체 평균의 약 1.9배에 이름.

사고건수 기준으로는 이륜자동차가 전체 교통사고의 6.2%를 차지하는 데 그치지만, 사망자 기준으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1.7%를 차지하여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 비중이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이륜자동차 사고는 다른 차종보다 심각한 인명피해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규위반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효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4)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s://taas.koroad.or.kr>)

5) 자동차사고 치사율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함.

그런데 현행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하고 크기도 작아,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실시간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륜자동차의 불법·난폭 운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면 번호판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⁶⁾.

또한 전면 번호판 부착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장치가 없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의무 부착 위치를 현행 ‘후면’에서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고,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이륜자동차 전면번호(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시범사업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정책 공감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충돌·파손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티커 재질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의 제작 세부사항과 관리

6)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면단속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인성이 개선된 후면번호판 제도(‘26.3~)를 운영 중이나, 후면단속장비는 신규 설치·교체 비용이 많이 들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후면번호판 가림 등으로 시인성이 전면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음⁷⁾.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면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둘째,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이륜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경우, 전면 번호판이 없으면 CCTV 영상 등을 통한 차량 식별이 어려워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식별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특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셋째, 제작·수입 단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7) 1차년도(2025.10~12)에는 국내외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도 분석 및 이륜자동차 차종별 전면번호판 적용성 검토를, 2차년도(2026.1~12)에는 번호판의 부착 적합성과 무인단속장비 인식성능을 고려한 재질·글꼴 등 디자인(안) 도출 및 부착대상·제작·발급·부착 등 관리체계를 반영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도출 연구를 수행 중임(참고1 참조).

의 제작·조립·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개정안 제49조의2 신설을 통해 제작·수입 단계에서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면 번호판 부착의 물리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반면, 다음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주행 안전성 검증이 미흡함.

국토교통부는 주행 안전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커 재질의 전면 번호판을 전제⁸⁾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 제49조의2는 제작·조립·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스티커 재질의 번호판과 부착장치 설치 의무 간에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2013년 이후 이륜자동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⁹⁾되었으나, 알루미늄 번호판의 주행 안전성 저해 및 보행자 충돌 시 상해 유발 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둘째, 제작·조립·수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수 있음.

8) ‘이륜자동차 전면번호(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은 전면 번호판을 스티커 재질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알루미늄판 안전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커 재질을 도입하기로 함.

9) 김동완의원 대표발의(1903407), 박완수의원(2002252, 2105436), 서용교의원(2104614), 박홍근의원(2110386), 윤재갑의원(2115671)

개정안 제49조의2는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제작·수입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과 설계 변경을 수반하는 신규 규제로, 국내 이륜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산업계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셋째, 기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개정안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스티커 재질의 전면 번호판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전면부 형상이 스티커 부착에 적합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 설치 없이 경과조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면부 구조상 스티커 부착이 곤란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거나 차체를 개조하여야만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비로 부착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비용 부담과 절차적 불편을 감수해야 함. 특히 이륜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배달 종사자 등 취약 계층의 경우 그 부

답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범죄예방·수사지원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행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입법 추진, 제작·수입자에 대한 규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번호판 부착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특정 이륜자동차가 번호판 부착 의무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데, 개정안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번호판은 전면 및 후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취지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전면 번호판 부착의무에 한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려는 취지라면 무인단속 및 범죄예방이라는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의 도입취지에 공감함

다만, 위임사항의 세부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으로, 1차년도('25.10~12) 연구는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카메라 인식 여부 등을 검토, 현재 2차년도('26.1~12)로 디자인·재질 등을 검토 중임.

현행 제49조는 제1항의 이륜자동차번호판과 제2항의 부착·봉인 방법을 모두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착 대상·위치 및 방법’만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동일 조문 내에서 위임 계층이 분리됨.

국토교통부는 주행안전성 논란 최소화를 위하여 스티커 재질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 중이고, 제작·조립·수입자에 대한 신규 의무 부과 사항으로 업계 규제로 작용 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1

이륜차 전면번호판 제도 도입방안 연구 개요

□ 이륜차 전면번호판의 제작 세부사항 및 관리체계 연구수행(TS)

- (1차년도 '25년) 이륜차 전면번호판 제도 도입 방향 설정을 위한 국내·외 이륜차 번호판 제도 분석 및 이륜차 차종별 전면번호판 적용성 도출('25.10~12월)

<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

- (재질) 알루미늄판 안전성 논란 최소화를 위하여 스티커 재질(싱가포르 등) 도입
- (단속) 단속장비에서 인식가능한 스티커 번호판 문자 최소 높이 35mm 도출
- (현장조사) 다양한 유형의 이륜차 전면 형태 조사
 - (조사대상) 274개 모델(사용신고 대수 기준 150만대, 약 70% 해당)
 - (조사결과) 전면번호판 크기별로 이륜차 순정상태에서 사용신고 대수 기준 최대 70%에 부착 가능 추정

※순정상태에서 부착 불가 이륜차 기종은 '방풍장치' 또는 '지지구조물' 설치 필요

< 금속 지지구조물 예시 >



- (2차년도 '26년) 번호판의 부착 적합성과 무인단속장비 인식성능 고려한 디자인(안) 도출 및 관련 행정절차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연구 수행 중('26.1~12월)
- (제작) 전면번호판의 재질, 글꼴 등 인식성능 확보 및 단속성을 고려한 디자인(안) 도출
- (관리체계) 전면번호판 부착대상·제작·발급·부착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반영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도출

참고2

전면번호스티커 시범사업 전면번호판 부착 사진

(1) 혼다 PCX 125



(2) 야마하 NMAX 125



(3) 혼다 FORZA 350

